

[별지 제61호서식] <개정 2005.8.4> (규칙 제145조제1항관련)
불법(시설)·(선전)물 표시문서식

불법(시설)·(선전)물	
이 선전물은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된 불법(시설)·(선전)물입니다.	적색
(설치자)·(철폐자)는 즉시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.	
○○선거관리위원회	흑색
(선거법 안내 ☎ ○○○ - ○○○○)	

주

1. 규격은 불법(시설)·(선전)물의 크기에 따라 16절, 8절 등으로 한다.
2. 적색글씨는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작성한다.
3. 철폐시는 불법(시설)·(선전)물과 일부 또는 전부가 중첩되도록 단단히 붙여야 한다.